# -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경기도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모집 공고

경기도는 **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및 처우개선과 복지향상**을 위하여 「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25일

###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### 모집 개요

○ 신청기간 : 2025. 10. 1.(수) 09:00 ~ 10. 16.(목) 18:00

○ 모집인원 : 2,000명

○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https://youth.jobaba.net) 온라인 신청

- 지원대상
  -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\* 경기도 거주자
    - \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  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 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 보험 가입자
    - ※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재직자 제외
    - ▶ 공공기관 범위 : 정부 공공기관,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 등
    - ▶ 관련 규정(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)
   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(공공기관), 「지방공기업법」제2조(적용 범위)
  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적용 대상 등)
  - 건강보험료 6개월(`25년 4 ~ 9월) 평균 127,195원(월 과세급여 359만원) 이하
- 지원내용 : 6개월 단위 1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- O 지급방법 : 6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
  - ※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
- 지원기간 : 2년

## Ⅱ 신청 자격

- 아래 ①~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[2025. 10. 1. 기준]
- ① 연 령: 2025. 10. 1.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\* 청년
  - \* 1985. 10. 2. ~ 2006. 10. 1. 출생자
  - 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- ② 거 주 지: 2025. 10. 1.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- ③ 근무조건
  -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\*에 주36시간 이상\*\* 근무하고 6개월\*\*\*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
    - \*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제외)
    - \*\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(단, 단축 이전 근로시간이 주36시간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, 증빙서류 제출 필수)
    - \*\*\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**'25. 4. 1. 이전(4월 1일 포함**)인 경우 해당
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<u>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6개월('25년 4월, 5월, 6월, 7월, 8월, 9월) 평균 127,195원(월 과세급여 359만원) 이하인</u> 자
  -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

#### <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>

- ▶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  - 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, 공공기관, 공기업,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비영리단체(사업자번호 82), 기타 중소기업 미분류 사업장(사업자번호 80, 89) 등 근로자
- ▶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) 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▶ 아래 ① ~ ③ 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(`24. 10. 1. ~`25. 9. 30.)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
  - \* 단, 2025. 10. 1. 이전,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  - ①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
    - ·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 I·II, 희망저축계좌 I·II, 청년희망키움통장, 내일 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)
  - · 취업성공수당(국민취업지원제도 I,II유형)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/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/ 청년내일채움공제('22년 참여자까지), 미래행복통장(통일부) 등
  - ·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(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,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등)
  - ②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舊 경기복지재단, 現 경기도미래세대재단)
  - ③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청년복지포인트)

#### <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>

- ▶ **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 / 휴식사**(육아휴직, 4~9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)
- ▶ 병역 복무 이행자(군인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- \* <유의사항>

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,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,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## Ⅲ 신청 방법

#### < 신청 시 유의사항>

- ▶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- ▶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 불가)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▶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
- ▶ **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**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 **신청 매뉴얼 참조(**홈페이지 → 자료실)
- 신청기간 : 2025. 10. 1.(수) 09:00 ~ 10. 16.(목) 18:00
- O 신청방법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(참여접수 →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
  - ※ 접수 문의 : ☎1577-0014 (평일 09시 ~ 18시)
  - ※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**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,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**(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)
- 제출서류 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  - 제출서류는 '25. 10. 1.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  - ※ 단,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최신 발급본인 경우에 한해 '25.10.1. 이전 발급분도 인정
  -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
  - ※ 단,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,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,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(1577-0014)로 문의

#### ① 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신청자 - [기본제출서류 5종]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지정서식 다운로드)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\* 6개월: '29년 4월 9월
- ⑥ [추가 증빙 필요시]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  - ※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**주민등록초본**, **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**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

#### ② 공공 마이데이터 미등의 신청자 - [기본제출서류 8종]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지정 서식 다운로드)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체)
- ⑤ <mark>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내역,</mark> 병역사항 전체 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
  - ※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, 주소변동,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, <u>초본 제출 필수</u>
-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(7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6개월분\*)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\* 6개월: '29년 4월 ~ 9월
-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\* 6개월: '29년 4월 9월
- ⑨ [추가 증빙 필요시]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
## **| | 선정 기준**|

- (필수요건)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
  -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)
  -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    - ※ 거주지 충족 여부, 6개월 이상 재직, 주36시간 이상 중소기업 근무 여부, 건강보험료 (최고 월 127,195원, 최저 월 66,840원) 기준 충족 여부,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
- (선정기준) 6개월('25년 4월 ~ 9월)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- (동점자 처리)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→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

# 기원 대상자 선정

- 선정자 발표 : **2025. 11. 12.(수) 예정** 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에 게재 \*\*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 VI 유의사항

- 공고문 및 유의사항, 신청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.
-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.
-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, 마감일인 10.16.(목)은 18: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하여,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〇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은 온라인 신청·접수이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신청매뉴얼, 증빙서류 예시 확인 必)
  - ※ 신청매뉴얼에 부합하지 않는 증빙서류,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 서류검증 시점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.

- 접수마감 이후 착오 기재된 신청서 수정 불가, 미비된 증빙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 등 불가하며, 참여자 귀책사유로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불일치, 허위·착오기재,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, 제출된 서류의 추가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의 서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, 정해진 보완기간 내(근무일 기준 3일 이내) 미대응 또는 다시 오제출한 경우, 서류 부적격으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세부일정은 서류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.
  - ※ 서류보완 대상자 중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**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(임시저장 등)**의 경우 **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**,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보완기간 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,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.
  - ※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**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'1577-0014'** 이며, 수신 거부 및 미확인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(약정서 제출 및 지역화폐 가입 완료 후 정보입력 등)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, 사업참여 포기 신청 도 하지 않을 경우 '선정전 자격상실'로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.
- 선정 대상자는 6개월마다 거주지, 사업장 규모,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 합니다.
-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지역화폐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 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
- 경기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및 경기도 「청년 노동자통장」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을 중도해지할 경우,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참여(선정 및 등록)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(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)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,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
  - ※ 타 유사 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 사업의 운영 해당 기관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: ☎ 1577-0014 (평일 09시 ~ 18시)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: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 FAQ 참조